

『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5월 7일

나. 발 의 자 : 김수민, 김상조, 김재상, 김정곤, 김정미,
김춘남, 김성현, 박교상, 박주연(9인)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5월 13일
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 수 민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 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서,
- 시민들에게 농업 참여의 기회와 공동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, 도농복합도시의 특색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도시농업의 기본이념 (안 제2조)
- 용어정의 (안 제3조)
- 시장과 도시농부의 책임 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 (안 제8조, 안 제9조)
- 시민간의 교류지원 (안 제6조)
-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지원 (안 제12조)
- 위원회 구성 및 기능 (안 제13조, 안 제14조)
- 보조금의 지원 등 (안 제1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
 -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 -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」
- 관련부서 의견
 - 선산출장소 **농정과** : 달리 의견 없음.
 - 농업기술센터 **기술개발과** : 의견 없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☐ 본 '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' 은,
 - 위 법령에 근거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 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**의원 발의된** 조례안으로서,

○ 그 주요내용으로는,

- 도시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실현하여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.
- 도시농업, 도시농부, 도시텃밭, 상자텃밭 등 용어정의.
-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, 시민간의 교류지원, 도시텃밭의 조성, 상자텃밭의 보급, 일자리 창출, 우수사례 발굴,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,
- 도시농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여, 위원장은 산출장소장이 되고,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,
- 또한,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사항을 명시.

□ 위와 같이,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안이 제정되었고, 해당부서의 의견이 없으므로,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